[붙임]

주요내용(요약)

(1) **(지원대상)** 축산업허가·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
* 기 지원을 받았던 자도 추가지원 가능(조합장 포함 농축협 임원은 제외)

** 우선순위 : ① 구제역 피해농가, ② 대규모농(소 150마리) 미만, ③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, ④ 청년창업농, ⑤ 대규모농 이상

(2) **(총사업비)** 특별사료구매자금 1.145조, 농가사료직거래 3,550억

(3) **(사용용도)**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

(4) **(지원조건)** **대출금리 1.0%**, 2년 일시상환(**농신보한도 2억원 → 3억원 상향**)

* '22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·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금리 1.0% 적용

(5) **(지원단가)** 농가당지원한도①와 농가의 사육마리수와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② 중에서 낮은금액에 기존의 대출잔액③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·추천

*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가능(ex.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받았던 자가 농가사료직거래 지원가능)

구 분	농가당 지원한도	마리당 지원단가
한육우	600,000천원	1,360천원
낙농	600,000천원	2,600천원

(6) **(신청방법)** 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접수

* 대출상황에 따라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

특별사료구매자금

☞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축산환경자원과	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	044-201-2351 044-201-2359

* 사업시행기관 : 각 시·도(축산담당과), 한우협동조합연합회(044-868-9902)

Ⅰ 사업개요

1. 목적

○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
2. 총사업비 : '22년 1.145조 원(이차보전)

○ 1조 1,450억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

* 대출상황에 따라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

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지원대상

❑ 지원대상자: 축산업허가·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
*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

*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·추천 가능

○ 축산업허가·등록이 불가능한 경우*에는 축산업허가·등록 없이 지원 가능

* 말, 토끼,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, 오리, 메추리, 타조, 꿩 사육농가

❑ 지원제외자

○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임직원*,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(비정규**의 계약직은 가능)

* 조합장(상근 및 비상근) 및 상근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제외자로 함

*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

○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

*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(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
○ '21년부터 '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(단, '21년 발생 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)

* 다만,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·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

○ '19.1.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(자연인 또는 법인)

① 대상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, 「동물보호법」, 「사료관리법」, 「악취방지법」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, 「축산법」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: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

-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 : 3년
-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 : 2년
-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*, 인증·지정 취소 : 1년

*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
❑ 지원축종 : 한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오리, 기타 가축*

* 사슴, 말, 산양, 토끼, 메추리, 꿩, 타조, 꿀벌, 면양·염소(산양에 준함), 거위·칠면조·기러기(오리에 준함)

2. 지원내용

❑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: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

* 사료 범위 :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· 배합 · 보조사료(TMR, 조사료 포함)

○ 설탕(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) :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,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

❑ 지원조건 : 대출금리 1.0%, 2년 일시상환

❑ 취급기간 : '22.6.1~'22.12.31

❑ 지원한도

○ 축종별 "농가당지원한도"와 "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"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

* "농가당지원한도"와 축종별 "마리당지원단가"는 [별표1] 참조

*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"농가당지원한도"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"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"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

*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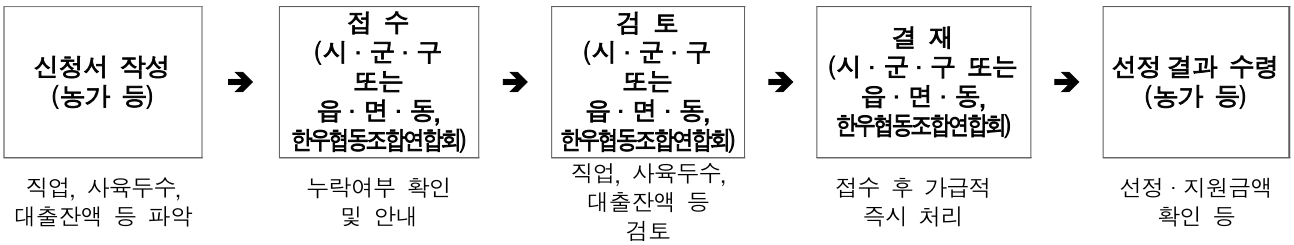
○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자도 지원 가능하며, 기존 지원 금액(대출잔액 기준)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

○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(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)

- 허위로 신청하거나,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

3.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

< 자금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❑ 사업대상자 선정

○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

❑ 선정순위

○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

- **(1순위)**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*, 강원·경기북부 양돈농가

  *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,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

- **(2순위)** 대규모농* 기준 미만 농가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)

  * 대규모농 기준 : 소 150마리, 돼지 3,000, 양계 90,000, 오리 15,000 이상

- **(3순위)** 환경부담 저감* 실천 농가

  * 동물복지형 축산(「동물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) 전환 농가, 다만 산란계 농가는 「축산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9041호, 2018.7.10. 개정)」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[별표 1]의 사육시설면적(0.075㎡/마리)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

  *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

  *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,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

- **(4순위)** 청년창업농

  *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

- **(5순위)**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)

  * 단,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(환경부담 유발 농가)는 가장 후순위로 함

구 분	양 돈	육 계
배합사료 급여량 (통계청,'20)	339.01kg(두당)	240.97kg(100수당)
준수기준	이유돈사료 100kg/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/두 이상 급여	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(100수당) 급여

4. 사업시행기관

❑ 시행주체 : 시·도(시·군·구 포함), 한우협동조합연합회

○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,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(한우에 한함)

*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·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. 다만,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·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(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)

❑ 대출취급기관 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상 조합(품목조합 포함) 및 농협은행

○ 대상자 선정·추천 시·군·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·군·구는 일치하여야 함

► 선정·추천받은 시·군·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

*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·군에서만 대출 가능

► 단, 해당 시·군·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

*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

*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

○ 대출금은 지역 농·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

○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며, 지원 잔액 부족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
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
☞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축산환경자원과	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	044-201-2351 044-201-2359

* 사업시행기관 : 각 시·도(축산담당과), 한우협동조합연합회(044-868-9902)

Ⅰ 사업개요

1. 목적

○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,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

2. 총사업비 : '22년 355,000백만원

○ 지자체별·축종별 농가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액 우선 배정

* 대출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을 시·도별 추가배정 예정

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※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중복내용 삭제

2. 지원내용

❑ 지원조건 : 융자 100%, 금리 1.8%, 2년 일시상환

* '22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·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금리 1.0% 적용

❑ 지원한도

○ 축종별 "농가당지원한도"와 "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"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

* "농가당지원한도"와 축종별 "마리당지원단가"는 [별표1] 참조

*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"농가당지원한도"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"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"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

*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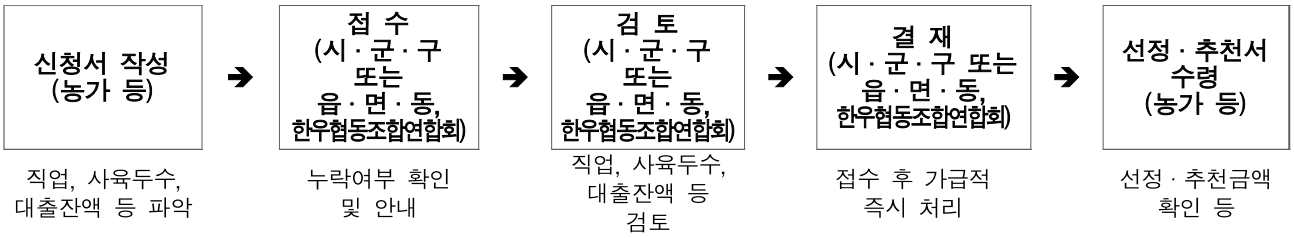
○ 당해 사업 및 '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(이차보전)'의 기존 지원 금액(대출잔액 기준)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

○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 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(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)

- 허위로 신청하거나,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

3.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

< 자금 신청 및 선정·추천 절차 >



❑ 대여금 배정

○ 연간 2회 분산 배정(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)

*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·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

❑ 사업대상자 선정

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주체별 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

❑ 선정취소 및 반납

○ 시·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취소 및 반납 등 조치(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)

►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·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(차순위)에게 재선정·추천 가능하며, 선정·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

4. 사업시행기관

❑ 시행주체 : 시·도(시·군·구 포함), 한우협동조합연합회

○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,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(한우에 한함)

*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·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. 다만,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·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(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)

❑ 대출취급기관 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상 조합(품목조합 포함) 및 농협은행

○ 대상자 선정·추천 시·군·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·군·구는 일치하여야 함

► 선정·추천받은 시·군·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

*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·군에서만 대출 가능

► 단, 해당 시·군·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

*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

*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

○ 대출금은 지역 농·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

○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며, 해당 시·도의 배정 잔액 부족 시 '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' 지원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

[별지 제1호 서식]

사 업 신 청 서

신청자	①성 명 (법인명)		②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③전화 번호	( ) -
	④주 소 (도로명 주소 기재)					
	⑤직 업	[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.]	⑥직 장 명		⑦전화 번호	( ) -
신청내용	⑧농 장 명				⑨전화 번호	( ) -
	⑩소 재 지 (도로명 주소 기재)					
	⑪축 종	[ ]한우 [ ]육우 [ ]낙농 [ ]양돈 [ ]양계 [ ]오리 [ ]사슴 [ ]말 [ ]산양 [ ]토끼 [ ]메추리 [ ]꿩 [ ]타조 [ ]꿀벌 [ ]거위 [ ]칠면조 [ ]기러기 [ ]면양 [ ]염소				
	⑫사육두수 (신청일 기준)	[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.]			⑬사육 면적	동 ㎡
	⑭기 지원현황 (백만원)	대출금액 :		대출잔액 :		
	⑮신청 금액 (백만원)	백만원(대출신청 농·축협 :) [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(상환예정금액)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]				
	⑯사용용도 (거래구분)	신규 사료구매( ), 기존 외상금액 상환( )				
	⑰기 타	구제역·ASF·AI 피해농가( ) / 강원·경기북부 양돈농가( ) / 모돈이력제 참여농가( )				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
⑱증빙서류 : 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2.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.
3. 대출관련 서류(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) 1부
4.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농가) 1부.

년 월 일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⑲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,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□

⑳본인은 농협 임직원·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. □

㉑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□

㉒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(KAHIS)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, '21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. □

㉓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,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□

㉔'19.1.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□

㉕2022. 12. 31.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,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□

상기 ⑲~㉕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( )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

귀하

( ) 한우조합장

<작성 요령>

- ▶ **①성　　명** : 농가는 개인의 성명,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.
- ▶ **②생년월일** : 농가는 생년월일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**③전화번호** :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.
- ▶ **④주　　소** :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**⑤직　　업** :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"축산업"이라고 적으세요.
- ▶ **⑥직 장 명** :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"농장명"을 적으세요.
- ▶ **⑦전화번호** :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**⑧농 장 명** : 농가는 개인 농장명,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.
- ▶ **⑨전화번호** :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**⑩소 재 지** :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**⑪축　　종** :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"O" 표시를 하세요.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,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.
- ▶ **⑫사육두수** :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.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.
- ▶ **⑬사육면적** :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.
- ▶ **⑭기 지원현황** :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.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"대출잔액증명서"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.
  - **지원년도** :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.
  - **사 업 명** :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.
  - **대출금액** :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.
  - **상환금액** :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.
  - **상환 예정금액** :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.
- ▶ **⑮신청금액** :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·축협을 적으세요. 단,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.
- ▶ **⑯사용용도** :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"O" 표시를 하세요.
- ▶ **⑰기타 :** 해당 구분에 "O"표시를 하세요.
- ▶ **⑱증빙서류** : 직업, 사육두수,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.
- ▶ **⑲ ~ ㉕동의 및 확인사항** :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"□"란에 "V"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.